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정보화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1. 임용 개요

가. 임용예정 직위, 직급, 인원 및 주요 업무 내용

임용 직위	임용 직급	임용인원	주요 업무 내용
정보화 담당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	○경기도교육청 정보화기본(시행)계획 및 정보화위원회 운영관리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정보자원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에 관한 사항 ○정품소프트웨어 보급·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각종 정보시스템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학교정보공시, 경기교육통계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학교 전산망 개선에 관한 사항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서비스 기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나. 근무기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 수원시)

다. 임용기간: 임용일부터 2년

※ 근무실적(성과)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라.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
- 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임용 신분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 당시 민간인,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4. 응시자격 요건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 .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가), 나)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경력 요건	(1)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5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응시자격증 구분표(전산 직렬) 참고
	(3) 공무원 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민간 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 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나) 실적 요건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상기한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수상 경력이 있거나, 상기한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관련 분야: 디지털전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화, 정보자원관리,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학교전산망, 교실정보화기자재 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형식요건심사(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여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적격성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요건의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 심사

6.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형식요건심사) 합격자 발표: 2026.11.6.(금)

나. 2차 시험(적격성심사): 2026.11.16.(월)

※ 면접일시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면접시험 순서는 원서접수 순으로 진행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12.4.(금)

라. 합격자 발표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뉴스/소식 → 시험정보 → 기타 시험안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10.20.(화) ~ 2026.10.26.(월)

나. 접수장소: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지방공무원인사과(인사운영담당)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 접수: 접수기간 내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 접수 시, 청사 1층에서 담당자에게 연락☎ 031-249-0352 또는 0364)

- 우편(등기)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원서접수 누락 예방을 위해 우편(등기)발송 전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운영담당(☎ 031-249-0352 또는 0364)에 유선 연락

[우편 발송 주소]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이의동),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운영담당
〈봉투에 “개방형직위(정보화담당관) 채용서류 재증” 명기〉

- ※ 응시자의 응시번호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하며, 응시표는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적격성심사 시험장에서 교부
- 라. 응시수수료 : 10,000원(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공무원인 경우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가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 서식) 1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6호 서식) 1부

(7)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7호 서식) 1부

(8)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

(10)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11) 경력증명서 1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비상근(시간제 등) 근무경력은 상근(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 경력증명서의 경우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12) 관련 분야 연구논문, 수상 증서 사본 등 실적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13)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8. 보수 수준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직급의 연봉한계액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한 연봉 상·하한액 〉

연봉 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천원)	하한액 (천원)
4호	·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u>70,490</u>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9. 기타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 분야)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라. 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우리교육청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은 경우 연장 공고
- 마.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바. 시험실시 결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희,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사람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의 최종결정을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 자.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방형직위 채용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됩니다.
-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사운영담당(☎ 031-249-0352, 03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I.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직급
경기도교육청	정보화담당관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4급 상당
4. 주요업무내용		5. 비 중
1. 경기도교육청 정보화기본(시행)계획 및 정보화위원회 운영관리		8%
2.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2%
3. 정보자원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에 관한 사항		8%
4. 정품소프트웨어 보급·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8%
5.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각종 정보시스템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6.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7. 학교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8. 학교 전산망 개선에 관한 사항		10%
9.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10.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11.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서비스 기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II.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① 필수 자격증 : ☐ 무, ☐ 유
	② 기타 필수요건 : ☐ 무, ☐ 유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1)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5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증 구분표(전산 직렬) 참고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3)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5) 실적요건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상기한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수상 경력이 있거나, 상기한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2. 관련분야 · 디지털전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화, 정보자원관리, 정보보안, 개인 정보보호, 학교전산망, 교실정보화기자재 분야 및 이와 관련된 분야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 무, [] 유 ② 외국어 : [■] 무, [] 유 ③ 정보화능력 : [■] 무, [] 유 ④ 기타 특별요건 : [■] 무, [] 유